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회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4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김회재·강준현·김수흥

박영순 · 송재호 · 신정훈

유준병 • 임호선 • 진선미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·연합회 또는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등 공제사업을 수행하며 불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방지하고자,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명령, 조사·검사 등을 통한 감독과 함께 임직원 징계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제금 지급이나 피해자 손해사정 등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,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 한 요건,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비용 확보,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하는 한편,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4항, 제71조제6항 및 제7항, 제76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제7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"한국교통안전공단"을 각각 "한국교통안전공단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보고서의 제출 등) ① ~	제65조(보고서의 제출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
	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
	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
	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
	여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
	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
	<u>야 한다.</u>
제7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	제7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	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
를 위한 조직・운영 등에 관하	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
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
<u>정한다.</u>	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
	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・운
	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령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	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
	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
	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동차손
	해배상진흥원 등에 지원할 수
	있다.

제76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국토
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
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조합, 연합회, 공제조합,
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
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
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
므레 조시되는 ス하 여하히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, 연합회, 공제조합,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.

제76조(권한의 위탁 등) ①
한국교통안전공단, 「자동차손해
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자동차손
해배상진흥원
②
한국교통안전공단,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
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